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

	<mark>は을 읽고 작성하시기 !</mark>	바랍니다.								(앞쪽)	
접수번호			접수일지	-							
1. 신청인	① 성명					2	생년월일				
(양도자)	③ 주소		'								
	· (전화번호 :)		
2. 장기임대주택(양도주택)											
④ 소 재 지											
⑤ 주택면적	m²			⑥ 토지면적					m²		
① 취득일자	년 월 일		ļ	⑧ 양도일자			년	월	일		
⑨ 세법상 사업자등록일				에 관한 부	간임대주택 특별법」 상 1등록일						
3.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											
구 분	임;	임대기경			기간		16	16 임대개일 당			
	⑪ 성명	⑫ 생년월일	(13) 기위	시일	① 종료일		15 기간		시 기준시기 계액		
최 초 임대											
2회 임대											
3회 임대											
 계											
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%						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									 제출합		
니다.											
								년	월	일	
신청인							()	서명 또는	는 인)		
	세무대리인							(,	서명 또는	는 인)	
(관리번호)										,	
세무서장 귀하											
첨부서류	 뒤쪽 참조								수:	수료	
<u>Θ</u> Τ^\ π	11月 13年				010	00	7 [1111.1] 00 /		없	음	

	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			
신고인	2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			
제출서류	3.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·주민등록증 사본 1부·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	수수료		
	수 있는 서류			
담당 공무원	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			
확인사항	2.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			

작 성 방 법

- 1. ⑤ 기간란: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.
- 2. ⑯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: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3.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: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.

임대기간	추가공제율
6년 이상 7년 미만	2%
7년 이상 8년 미만	4%
8년 이상 9년 미만	6%
9년 이상 10년 미만	8%
10년 이상	10%

4. ■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